

# 대외기관과의 교류협정 체결에 관한 규정

제정 2012. 2.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포항공과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가 국내·외 대학, 기관 및 연구소 등 외부기관과의 대외협정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부기관의 선정)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외부기관의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분야에서 수월성이 인정되며, 우리 대학의 교육 및 연구의 질적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관
2. 기타 학교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상호 교류협력이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기관

제3조(발의절차) ① 대외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외부기관 개요, 협정체결 사유, 추진방안, 기대효과 등이 포함된 ‘대외협정 추진 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기관: 대외협력팀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외에 있는 기관: 국제협력팀

② 대외협정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단위부서에서는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관련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상호 학점인정, 공동학위 및 복수학위 등 학사관련 사항을 수반하는 경우
2. 예산, 공간, 기자재, 주거시설 등 대학의 각 종 행·재정상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우
3. 기타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주요 정책, 장기 발전계획 등과의 밀접한 연관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4조(승인 등) 주관부서는 총장의 승인에 따라 협정체결을 추진하되, 협정의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획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체결권자) 대외협정의 체결권자는 총장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체결권자를 단위부서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 6 조(효력발생) 대외협정의 효력은 협정서에 쌍방의 대표가 서명함으로써 발생한다.

제 7 조(협정체결식) 대외협정 체결식은 외부기관과의 상호 협의에 따라 시행한다.

제 8 조(사후관리) ① 대외협정서의 원본은 주관부서에서 보관·관리한다.

② 대외협정을 발의한 부서는 협정체결로 인한 실적을 관리하고, 매 학년도 말 주관부서에 통지함으로써 협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